



크리스찬 김

변호사

## 사건 정황 따라 4~7년내에 청구해야

채무자들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산을 숨기고 재산을 양도하기조차 합니다.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갚지 않으려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그 답은, 이러한 양도는 캘리포니아 법상 사기성 양도로 간주하므로, 채무자와 그 양도된 자산을 받는 개인과 회사를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.

사기성 양도의 다른 형태 또한 채무자가 사기성 양도 당시 지급불능 상태였는지와 채무자가 양도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았는가를 고려합니다. 예를 들어, 채무자가 10만 달러를 빚을 졌는데도 자신의 전 자신인 20만 달러의 에퀴티가 있는 집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딸에게 양도했다면 그것은 사기성 양도일 수 있습니다.

캘리포니아에서 사기성 양도에 대한

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4년에서 7년까지입니다. 채권자가 법적 소송시한보다 오래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면, 채권자는 사기성 양도에 대한 소송을 영구히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채무자가 자산을 사기성으로 양도하고서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일례로, 연방법 11권 727조에 의하면, 파산 일 년 내에 사기성 양도가 있었던 경우, 채권자는 파산법정에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파산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말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기성 양도를 주장하여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파산 신청 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.

일단 채무자가 챗터 7을 접수하면,

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속하는 사기성 양도 주장권은 파산관재인이 소유하게 됩니다. 즉,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파산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, 파산관재인만이 파산 사건에서 그 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경우, 파산관재인이 취득하는 회수금은 이전에 사기성 양도 청구권을 소유했던 채권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. ▶문의: (213)368-5000, ckim@dumas-law.com

새로 칼럼을 시작한 크리스찬 김 (Christian T. Kim) 변호사는 Dumas & Kim, APC의 주주입니다.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및 전문변호사위원회로부터 공인 파산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불법양도 재판 전문 변호사입니다.